

QR코드 인식을 통한 외국인 숙박신고 안내

2022. 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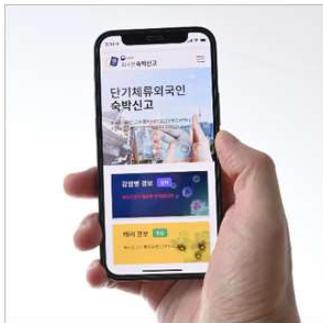
법무부는 공항만에서 발급하는 입국심사증*을 2022. 9. 22.부터 현행 교부 방식에서 부착 방식으로 변경하고, 숙박업자가 입국심사증에 인쇄된 QR코드를 이용하여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절차를 간편화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국심사증'은 외국인 입국 시 여권에 날인하는 입국심사인을 대체하는 확인증으로서, 2018. 1. 1.부터 교부식으로 발급을 시행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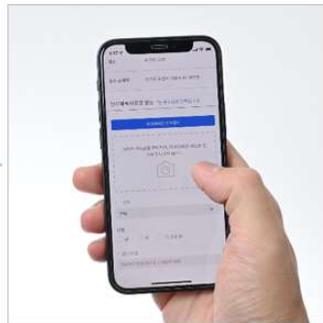
입국심사증의 QR코드 인식을 통한 외국인 숙박신고

QR코드로 외국인 숙박신고하기

"외국인숙박신고" 앱을 실행합니다.



"외국인숙박신고" 메뉴의 "QR코드 인식" 기능을 실행합니다.



부착식 입국심사증의 QR 코드를 스캔합니다. 여권에 부착된 어떤 것이든 무관합니다.



부착식 입국심사증

2022. 9. 22. 부터 입국심사증의 발급 양식이 기존의 교부식에서 여권 부착식으로 변경되며, 새 양식으로 QR코드 인식을 통한 외국인 숙박신고가 가능해집니다.



기존 교부식 입국심사증



1] 제도 목적

-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및 테러경보 발령 시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체류지 확인('20. 12. 10. 시행)

2]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 (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의2 (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자료)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의3 (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방법 등)

3] 운영 시기

-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였거나, 대테러센터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한 때
 - ※ 경보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상향

2] 운영 내용

- 제도적용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 발령 12시간 이내에 숙박업자*로부터 단기체류 외국인**의 숙박정보를 숙박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신고 접수

*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자가 해당

** 단기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자격을 가진 자가 해당

- 숙박업자가 숙박신고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거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임시 신고 서식을 이용하여 E-MAIL, FAX, 문자메시지,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 가능

※ 신고 접수 완료 시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안내

※ '20. 12. 10. 제도 시행 시 이메일, 팩스 등으로 숙박 신고를 접수하였고, '21. 12. 22. 부터는 숙박신고시스템(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 신고 가능

(앞쪽)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서 (Declaration Form of Lodging Registration)

숙박업소 기재란 (for accommodations)

① 사업 자 등 록 번 호	
② 업 소 명	
③ 소 재 지	
④ 전 화 번 호	

단기체류 외국인 투숙객 기재란 (for short-term stay visa holders)

연번	투숙일자 (Date)	국적 (Nationality)	생년월일 (Date of Birth)	여권번호 (Passport No.)	투숙기간 (Length of Stay)
1					
2					
3					
4					
5					
6					
7					
8					
9					
10					

(yyyy) 년 (mm) 월 (dd) 일

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신고 안내

- 본 서식은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에 따른 임시 신고서식입니다.
-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에 적용됩니다.
- 관광·방문 등 목적으로 국내에 90일 이내 체류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위의 위기경보 발령 시, 숙박업자에게 본인의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숙박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숙박업자는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투숙중인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본 서식을 활용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E-MAIL,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숙박업자는 신고접수 확인 후 신고서식 및 해당 외국인의 정보를 파기하시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입력한 외국인 및 숙박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숙박업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00조3항에 의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Lodging Registration

required from *10 December 2020*



All short-term stay visa holders should

- Register lodging info during check-in
- Present passport at counter
- Fill out Declaration Form

Non-compliance will result in KRW 500,000 fine

Visit the www.hikorea.go.kr for more info.